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보

제1487호 2023년 8월 25일(금)

입법예고

○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2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속초시 공고 제2023 - 856호

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보육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5일

속 초 시 장

1. **자치법규명** :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**개정이유** : 국공립어립이집 위·수탁과 관련하여 위탁계약과 재위탁 조항을 명료화하여 재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신설및 자체시비 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비 지원 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가. 공립어린이집 공개모집에 대한 세부규정 개정(안 제18조제2항)

나.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및 재위탁 규정 신설 (안 제20조)

다. 특별활동비 신설 및 자체시비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규정 개정(안 제22조제1항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교육가족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 · 반대 여부와 그 사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1)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
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(안심보육팀)

2) 연락처 : 033-639-2043 (FAX 033-639-2059)

3) 전자메일 : ssung0819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안심보육팀 (033-639-204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
제21조를 삭제하고, 제20조를 제21조로 하며,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위탁계약)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1.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

2.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

3. 그 밖에 시장이 위탁기간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③ 제2항의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재위탁 할 경우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

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3호를 제6호로 한다.

1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
2. 보육교직원 대체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
3. 어린이집 급식 비용
4. 어린이집 에너지 이용 비용
5. 어린이집 특별활동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위탁운영) ① (생 략)	제18조(위탁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	② 시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<신 설>	제20조(위탁계약)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 1.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.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 3. 그 밖에 시장이 위탁기간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의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. 다

	만,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. ④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재위탁할 경우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할 수 있다.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제20조 (생 략)	제21조 (현행 제20조와 같음)
제21조(위탁기간 등)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3년 이상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 1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. 시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②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다.	<삭 제>

제22조(비용의 보조) ① 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기준을 정하고,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	제22조(비용의 보조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의 아동 및 법정 저소득층·다문화가정·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	1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
2. 시간연장 및 방과 후 아동보육료	2. 보육교직원 대체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
3. 영·유아의 건강검진비	3. 어린이집 급식 비용
4. 초과보육(방과후, 휴일, 야간)에 드는 비용	4. 어린이집 에너지 이용 비용
5. 어린이집의 설치, 증·개축 및 개·보수비	5. 어린이집 특별활동비
6. 보육교사 인건비	<삭 제>
7. 교구·교재비	<삭 제>
8.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	<삭 제>
9.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	<삭 제>
10.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 인	<삭 제>

력비	
11.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	<삭 제>
12. 어린이집 차량운영비	<삭 제>
13. (생 략)	6. (현행 제13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
	주소	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조례명 : 속초시 보육 조례		
	당사자	성명(명칭)	
		주소 (전화번호:)	
	의 견		
	기 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44조(의견제출 및 처리)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